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 획 예 산 과 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 화 : 2094-0525



제2297호 2018. 2. 14.

자 치 법 규

[조례]

제122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일부개정조례

고 시

제2018-7호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7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525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122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나 진 구 (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
법」 제116조의2에 따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로,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5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5인”을 “5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중랑구</u>		<u>서울특별시 중랑구</u>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등) ①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1명----- 20명 -----.		
②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제16조에 따른 ----- 사람 -----.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사전재해영		제3조(기능) ----- 사전재해영		

향성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향성 검토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5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

----- 1명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

② ----- 따라 -----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제2조에 따라 -----
----- 5명 ----- 10명 -----
-----.

제7조(현지조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

제8조(수당 등) ----- 범위 -----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6.1.27. 공포, 2017.1.28. 시행)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변경(제1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개정으로 관련 업무 주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제3조제4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7호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중랑구 중화동 1-1번지 일대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1-1번지 일대
 - 면 적 : 7,402.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군욱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3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8.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 7,402.77㎡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아파트 4개동 1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최고높이 : 22.55m이하,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용적률 : 34.77% / 199.76%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60㎡ 미만	59.44A㎡	7	
	59.44B㎡	6	
	59.47㎡	35	
	59.59㎡	27	
	59.93㎡	6	
전용면적 60㎡ 이상	67.22㎡	7	
	67.24㎡	28	
	67.58㎡	21	
	74.98㎡	28	
	80.45㎡	7	
	80.96㎡	7	
합 계		179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 처리사항

-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11. 기타 관계도서 :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 2094-2133)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